

◆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-277 호

「양곡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4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국회, 언론 등에서 현행 쌀 등급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
 -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로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됨을 지적
 - 또한 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생산 방안 중의 하나로 등급표시율 확대에 대한 필요성 제기
- 이에 현행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하여 등급표시율 제고

2. 주요내용

- 「양곡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 관련 별표 4(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)의 등급표시에서 ‘미검사’를 삭제
 -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‘미검사’에 관한 조항 삭제
 - 등급표시제 연착륙을 위한 제도이행 준비,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
 -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, 벼 매입자금·시설현대화 등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2년 부여

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의견이 있는 단체(법인)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이상만 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
| 개정안 | 수정안 | 수정사유 |
|-----|-----|------|
| | | |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,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wuxal052@korea.kr

2) 우 편 : (우 339-012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5동,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

3) 팩 스 : 044-868-2306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(전화 044-201-182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 <정보광장 - 법령정보 - 입법예고>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